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
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4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·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·군·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
위원을 확대하도록 일부 개정된 「공직자윤리법」('20.12.22. 공포)이 '21.6.23.자로 시행
예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사항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[조례안 제3조(구성)]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원	총 5명 중 3명	총 7명 중 5명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는 2021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감사담당관, 주소 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, 전화 : 02-3396-4414, FAX : 02-3396-9015, e-mail : tiadiary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- 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5명” 을 7명으로, 같은 항 제1호 중 “3명” 을 “5명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3명” 을 “5명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5명</u>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"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<u>3명</u>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<u>3명</u>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(구성) ① ----- -----<u>7명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5명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5명</u>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